

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3. 3. 23.>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(제10조의2제2항 관련)

1.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라. 사회복지시설·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마.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바.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2.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

가. 사무국장

- (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(2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(3) 사회복지시설·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(4)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나. 생활복지사

- (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- (2)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- (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(4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
- (5)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·교육학·여성학·사회학·사회사업학·법학·신학·의학·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

다. 생활지도원

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라. 간호사

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(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) 자격이 있는 자. 다만,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마. 영양사

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사 자격이 있는 자

바. 조리사

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조리사 자격이 있는 자

사. 관리인

신체건강한 자로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